

집중탐구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정책

2019

올해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정책·제도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문에 있어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정부가 올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인 초청 간담회' 모습.

농식품 부문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2018년 91만원→2019년 97만원)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만3,650원으로 인상,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한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한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된다.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한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더불어 품목 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ha당 400만원→430만원), 두류(ha당 280만원→325만원)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 **밀 비축제 시행**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2019년 2월 잠정)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 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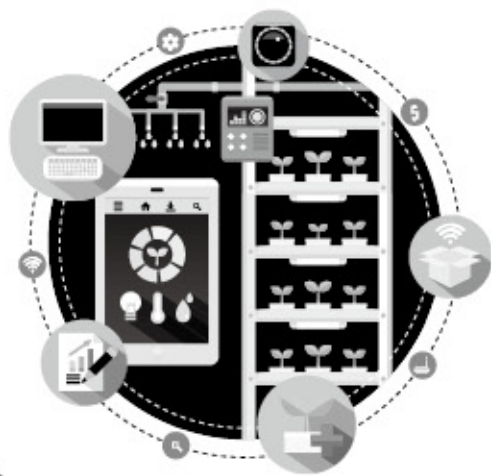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 시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은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20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해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한다.

☉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고령친화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한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km, 그 외 지역은 5km)이 완화된다. 또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설립가능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ml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비료관리 강화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한다.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한다.



☉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올해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축산 부문

☉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회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키 위해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개소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걸쳐 6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오는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된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